

《2022. 1월 1차》

# 청렴메아리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 2022년 신년화두 (신증모시)

『맷음을 증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 5. 19. 시행예정) 관련 설명자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령 제정.”

### 관 련 내 용

(이해충돌의 정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이해충돌 방지제도

###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

#### 신고·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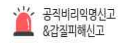
청  
렴  
淸  
廉

###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제한·금지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익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부  
조  
리  
신  
고

-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 케이휘슬 연결)
-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